

2020년도 제3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0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택수,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3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61건(안건번호 제2020-162511호 ~제2020-16283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76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3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6쪽의 온라인서비스명 및 이용자 아이디, 7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B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공개 처리안에 동의함.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D 위원, E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안에 동의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6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62511호~제2020-16283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2511호는 민원인의 신고를 바탕으로 보호원이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채팅방에서 직접 링크(direct link)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62511호에 대해 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시정권고 대상이 정확히 어디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임.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직접링크 게시물에 연결된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C 위원: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당 콘텐츠를 검색할 수도 없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임. 사적 이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웹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방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므로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희박함.
- B 위원: 검색가능 여부가 시정권고 필요 요건이 아니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시정권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신고한 직접링크 게시물에

의해 연결된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 국내 서버에 저장된 원천게시물이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바 있음.

- C 위원: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고한 채팅방 캡처 화면만 있는데, 해당 채증자료에서는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 1명만 확인됨.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기에 조심스러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 신고 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캡처한 화면을 보시면 해당 채팅방 이용자가 300명임을 알 수 있고,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읽은 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약 90명이 넘었음.
- C 위원: 그렇다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E 위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게시물은 시정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지? 혹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원천 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 불법복제물 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직접링크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으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았음.
원천 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보호원의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이므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보다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운영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 A 위원: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적극적인 조사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음.
또한 SNS 관련된 사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존중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해당 사건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제·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가결함.
- A 위원, B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251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2512호~1628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

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물 '이번 생은 부동산이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0-16258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이번 생은 부동산이다' 전체분량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콘텐츠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25화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이외에는 한 화당 100원에 구매 가능함.

(방송 '기묘한 이야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62740호는 미국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2 4-6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29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mkv 영상파일과 smi 자막 파일을 함께 제공 중임. 해당 콘텐츠는 총 9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2017. 10. 27.부터 공개되었음.

(영화 '포드 대 페라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62784호는 2019. 12. 4. 개봉한 미국 영화를 모바일웹하드 사이트에서 1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우리말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콘텐츠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2,800원에 대여, 6,7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62512호~1628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2512호~16283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2511호~1628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3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